

제332회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 3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5년4월28일(화)

장 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3. 동물원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심사된 안건

1.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이찬열·최원식·배재정·전순옥·정성호·부좌현·황주홍·박주선·전정희·이한성·김제남 의원 발의)(계속) 2
2.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현주 의원 대표발의)(민현주·김정록·김상민·이만우·이종훈·김동완·권은희·강은희·박인숙·홍지만 의원 발의)(계속) 2
3.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이윤석·노영민·최규성·강창일·배기운·박수현·김광진·이미경·김영환 의원 발의)(계속) 2
4.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2
5.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
6.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2
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최봉홍·박성호·박창식·유승우·박상은·황영철·주영순·김정록·이상일·김재원·성완중·류지영·김성태·이자스민·남경필·강은희·서용교·김을동·이운룡·신경림·박민식 의원 발의)(계속) 2
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2
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
1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박병석·김기준·박민수·강기정·이원욱·정세균·홍익표·은수미·김성주·이미경·임수경·박주선·권성동 의원 발의)(계속) 2
1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남 의원 대표발의)(김용남·황영철·김종태·송영근·홍철

호 · 주영순 · 최봉홍 · 권성동 · 배덕광 · 문대성 의원 발의)(계속) 2

1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 · 최원식 · 은수미 · 진성준 · 김용익 · 김진표 · 원혜영 · 한정애 · 추미애 · 배기운 · 이찬열 · 장하나 · 최민희 · 한명숙 · 진선미 · 임수경 · 전순옥 · 김재윤 · 박남춘 · 안규백 · 남인순 의원 발의)(계속) 2

13. 동물원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9

(14시10분 개의)

○위원장 김영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 의결한 다음 동물원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법률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권성동 법안소위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 · 이찬열 · 최원식 · 배재정 · 전순옥 · 정성호 · 부좌현 · 황주홍 · 박주선 · 전정희 · 이한성 · 김제남 의원 발의)(계속)
2.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민현주 의원 대표발의)(민현주 · 김정록 · 김상민 · 이만우 · 이종훈 · 김동완 · 권은희 · 강은희 · 박인숙 · 홍지만 의원 발의)(계속)
3.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 · 이윤석 · 노영민 · 최규성 · 강창일 · 배기운 · 박수현 · 김광진 · 이미경 · 김영환 의원 발의)(계속)
4.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5.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6.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최봉홍 · 박성호 · 박창식 · 유승우 · 박상은 · 황영철 · 주영순 · 김정록 · 이상일 · 김재원 · 성완중 · 류지영 · 김성태 · 이자스민 · 남경필 · 강은희 · 서용교 · 김을동 · 이운룡 · 신경림 · 박민식 의원 발의)(계속)

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 · 박병석 · 김기준 · 박민수 · 강기정 · 이원욱 · 정세균 · 홍익표 · 은수미 · 김성주 · 이미경 · 임수경 · 박주선 · 권성동 의원 발의)(계속)

1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남 의원 대표발의)(김용남 · 황영철 · 김종태 · 송영근 · 홍철호 · 주영순 · 최봉홍 · 권성동 · 배덕광 · 문대성 의원 발의)(계속)

1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 · 최원식 · 은수미 · 진성준 · 김용익 · 김진표 · 원혜영 · 한정애 · 추미애 · 배기운 · 이찬열 · 장하나 · 최민희 · 한명숙 · 진선미 · 임수경 · 전순옥 · 김재윤 · 박남춘 · 안규백 · 남인순 의원 발의)(계속)

○위원장 김영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권성동 법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1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법안심사소위원장 권성동입니다.

지금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4월 27일, 28일 양일간 환경부 차관, 고용노동부 차관 등 정부 측 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사항 등을 중심으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10건의 안건을 심사 완료하였고, 기타 법률안에 대해서는 추후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환경부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태 의원, 민현주 의원, 주승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 제명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간결하게 하였으며, 환경부장관 등이 실내라돈조사, 라돈관리계획 수립을 하도록 함으로써 라돈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며,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자 등은 오염물질 방출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받은 후 공급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와 관련하여 1년에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시멘트와 단열재의 유해성에 대하여 검사를 하고,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 환경부령을 개정하여 관리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붙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초미세먼지와 오존을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저감목표에 추가하고, 수도권대기환경연구지원단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연구지원단의 업무 범위와 관련해서는 시행계획의 조사 연구와 추진실적의 평가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최봉홍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과 취급기준 등을 준수하면 원칙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되, 매립형태의 재활용 기술과 재활용 원칙과 준수사항이 정해지지 않은 폐기물의 재활용 기술은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도록 하여 사전예방적 환경관리를 강화하고 재활용 신기술의 시장 진입이 용이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환경부는 폐기물의 재활용 확대와 관련하여 지방환경청 인력 확보 등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붙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안전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국민연금보험료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에서 보조하는 이른바 실업 크레딧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2014년 12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부합하도록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김정협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용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사주제도의 손실보전거래제도 및 대여제도를 도입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신설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대부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규제개혁사항 중 신용보증지원사업상 금융회사의 통지의무 규정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회의록 작성·보관의무 규정은 삭제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재산 형성을 위한 우대저축제도를 지원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주 권성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심사를 하기 전에 축조심사 생략의 건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정하여 심사하는 12건의 법률안은 소위 심사 과정에서 각 조항별 축조심사를 하여 충분히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할 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금년 3월 19일부터 시행된 개정 국회법 제66조 제3항과 제79조의2항에 따르면 위원회가 제안한 위원회안과 대안은 물론 위원회 수정안의 경우에도 반드시 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 국회법 취지에 따라 오늘 의결할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를 첨

부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함을 고려하여 국회법 제79조의2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각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기 전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조경태 의원, 민현주 의원, 주승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에 의사일정 제5항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부가 제출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 최봉홍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에 의사일정 제9항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김용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김경협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봉홍 위원 위원장님, 이거 결의하기 전에 장관님한테 확인을 할 사항이 있어 가지고……

○위원장 김영주 좀 이따, 가결을 해야 되니까 우선 이따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법안은 다 가결했으니까 최봉홍 위원님, 환경부장관께 이 법안 관련해서 말씀하십시오.

○최봉홍 위원 노동부장관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노동부장관께 말씀하십시오.

○최봉홍 위원 어제 법안소위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적정임금으로 결의를 하셨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최봉홍 위원 그런데 오늘 언론에 보면 그 내용 자체가 정부가 답변한 내용과 틀리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임금제도가 옛날부터 통상임금, 평균임금, 각종 수당 해 가지고 구구각색이었는데 새로운 임금 용어를 구성함으로써 인해서 그 뒤에 돌아올 사회적인 혼란은 시간을 두고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제도 제가 차관님한테 물었습니다만 정부는 헌법 규정에 따른 노력의 의무를 최저임금법에서 재차 강조한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밝히고, 그런데 오늘 언론에 보면 ‘공공 부문에서는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민간부문에서는 최저임금제로 임금체계가 자리 잡는다’ 이런 보도가 되고 있어 가지고 이것이 국민들하고 일반 산업현장에 엄청난 오해가 일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로서 이 심해질 노사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는지 장관님의 분명한 입장을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법안은 통과됐습니다만 거기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혼선 안 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지난 3월 2일 우리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말 그대로 헌법에 규정돼 있는 그 사항을 저희 최저임금법에 규정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으니, 즉 ‘국가와 자치단체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적절한 임금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정의돼 있는 적정임금을 각 자치단체가 생활임금으로 부르든 적정임금으로 부르든 아니면 생산성임금이라고 부르든 말 그대로 최저임금 이상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조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재정 또 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서 이 부분을, 노력의 정도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얘기한 대로 공공기관은 생활임금 또 민간은 최저임금 이렇게 이원화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노력 조항이고 따라서 그때 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노력 조항이기 때문에 다른 법률적 기속행위, 이걸로 인해서 법률사항들이 기속되는 것은 최저임금법하고 이원화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옳지 않다, 예를 들어서……

○**최봉홍 위원** 아무리 노력 조항이라도 법률에 삽입이 되면 법률용어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법률용어는 적정임금입니다.

○**최봉홍 위원** 이 문제는 일반 산업현장에 혼란이 안 가도록 언론을 통하든지 기자회견을 하시든지 해서 홍보를 단단히 해 가지고 혼선이 안 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위원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걸로 인해서 입찰을 규제를 한달지 이렇게 하게 되면 법률과는 상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난 3월 2일에도 말씀드렸듯이 ‘규제적 부분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는 분명히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봉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최봉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오늘 의결한 법률안과 관련해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존경하는 김영주 환경노동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환경부 소관 9건의 개정 법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주심에 따라 유해도가 낮은 폐기물의 재활용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유해성이 있는 폐기물의 재활용과 매립형 재활용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사전평가를 거쳐 승인받은 경우에만 재활용토록 함으로써 환경과 건강 보호를 담보하면서 재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내공기질관리법과 관련하여서는 시판 건축자재의 환경성에 대한 현행 사후적 표본확인제도는 한계가 있어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로 하여금 자재 공급 전 시험을 확인받도록 전환하면서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요율을 인상함으로써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주심으로써 국민적 우려가 큰 초미세먼지와 오존이 환경관리 대상에 편입되었고 오염감축정책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환경부 소관 법안의 심의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김영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법안심사소위원회 권성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심사소위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용노동부장관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보험법 등 3건의 개정안을 의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법안소위 심의 과정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신 권성동 법안소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하여 주심에 따라 구직자가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에도 정부 지원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의결로 우리사주의 손실 우려는 줄이면서 안정적인 추가 수익 확보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보완되었고 둘 이상의 중소기업

업이 공동으로 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근로자 복지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한편 헌법에 규정된 적정임금 보장 노력 조항이 최저임금법에 반영되어 국가와 자치단체가 소속 근로자 등에게 적정한 임금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법률 개정안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주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애 위원님, 법안 끝나면 하실 말씀이 있다고 아까 미리 요청하셨는데 말씀해 보십시오.

○한정애 위원 노동부장관님께 현안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 보셔서 아마 아실 텐데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3월 10일자 한 경제지에 난 내용입니다. 아마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제목이 이겁니다. ‘호봉에 기댄 기성세대·양보 안 하는 강성노조가 일자리를 막아’라고 돼서 한 경제지 3월 10일자에 난 기사입니다. 이것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우리나라의 경직성 얘기를 하면서 소위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는 바뀌어야 된다는 게 대부분의 전문가와 여론의 시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아니, ‘양보 안 하는 강성노조가 일자리를 막아’에 동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 기사 내용은 전반적으로 봐야 알겠습니다. 전문가의……

○한정애 위원 기사 내용을 전반적으로 봐야 아는 게 아니라 이것은 노동부가 의뢰해서 낸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가 그렇게 써 달라고 한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톤 처리를 하는데……

○한정애 위원 아니, 이렇게 써 달라고 했지요. 이렇게 톤을 잡아 가지고 주신 거지요.

3월은 노사정 대타협을 위해서 치열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 노동부가 언론사를 선택해서 특정한 내용의 기사를 작성해 달라고 하고 사실은 이 언론사에 5500만 원을 줬습니다,

홍보비로. 교묘하게, 저는 이거는 교묘하다고 생각합니다.

광고가 아닌 마치 중립적인, 그리고 언론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해서 실질적으로는 강성노조를 타하는, 노동시장이 이렇게 문제고 일자리가 안 나오는 것이 노조의 탓이다라고 하는 책임을 돌렸는데요. 대한민국의 대기업 노조가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노동자 수의?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한 6% 정도 됩니다.

○한정애 위원 6% 안 됩니다. 전체 노동자의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장관님.

이 3%가 무엇을 막아서 완전히 97% 또는 청년실업을 가중시키고, 문제의 원인이 된다고 하시는 건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러니까 그 기사 내용을 전반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대외적으로……

○한정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해당 언론사가 3월 10일·11일·13일·23일, 4일에 걸쳐서 노동시장 새 틀 짜기, 이거 계속 노동부가 죽 말씀하셨던 거지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아닙니다. 내용을 저희가 의뢰한 게 아니고……

○한정애 위원 이중구조 개선해야 된다고 새 틀을 짜자라는 제목하에 5건의 기사를 발생시켰고요, 이 기사 보도에 대한 대가로 노동부는 이 언론사에 550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저는 국민들이 세금을 낼 때 정부의 정책을 홍보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런 방법이 아니고도 홍보를 하시지요. SNS를 통하시기도 하고 실제 광고를 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광고를 통해서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나쁜 방식으로, 이거는 악의적으로 방식을 택하신 거예요.

흔히 말하는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수님들보고 기고하라고 하고 언론사에서 그 기고비를 줘야 되는데 왜 노동부가 그 기고비를 교수님들한테 줘니까?

위원장님, 이건 노사관계 자체를 굉장히 왜곡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 관련해서 사실은 국민을 호도시키는, 여론을 왜곡하는 행위를 지금 노동부가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니깐 노동부는 ‘우리만 아니라 다른 부처도 그렇게 한다’라고 해요. 저는

이건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 그 부분은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아니요, 됐고요.

장관님,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아니, 설명을 좀 드리고……

○**한정애 위원** 이거 관련해서 그 실태를 파악해주세요. 전체 홍보예산을 얼마를 책정했고—저희가 파악한 것도 있으니까—그 홍보예산에서 정말로 광고와 홍보를 통한 것에 얼마를 지불했고 그리고 경제지든 신문이든 언론사 기고, 어떠한 내용으로 어떤 내용의 기사가 나왔고 해서 얼마를 지급했는지 파악을 해서 여기 저희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실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내용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 기획홍보를 하게 되면……

○**한정애 위원** 저는요,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러니까 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정부가 이쪽 방향으로 해 달라는 취지가 아니고……

○**한정애 위원** ‘양보 안 하는 강성노조가 일자리 막아’ 이런 식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사를 내는 것이 노사관계를 개선시키는 데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우리나라의 호봉……

○**위원장 김영주** 장관님, 아까 요구한 자료는 우리 위원회에 주시고 지금 장관님께서 하시고 싶은 얘기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러니까 내용을 정부가 이 내용으로 써 주십사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기획홍보를 하게 되면 기획홍보사에서 방송이든 언론이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SNS든 그걸 다양하게 구성을 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우리가 이쪽으로 해 달라고 주문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정애 위원** 그 기획홍보사에서 입맛에 맞는,

즉 다시 말해서 노조를 적대시화하고 노동조합을 모든 문제의 근원으로 만들어 버리는 식의 기고문, 기사를 작성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노동부가 하는 게 아니면 누가 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영주** 한정애 위원님, 고용노동부에서 거기에 대한 자료 보내 주기로 했으니까 하시고, 두 분 장관님 수고하셨지만 우리가 임시국회에 현안질의가 없어서 제가 두 분 장관님께 간단하게 하나씩 당부드릴 게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 위원장님 하신다면 저희가……

○**위원장 김영주** 이것도 질의니까 하고 그렇게 해 드릴게요.

환경부장관님, 지난주에 방송에서 학교 석면 발표한 거 방송 보신 적 있으신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위원장 김영주** 아마 서울의 조사 대상 562개 초등학교 중에서 497개 학교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고 하고 오늘 일부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학교의 88%가 석면에 지금 노출돼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 수가 45만 6000명, 교원이 3만 명, 한 90% 가까이가 석면에 노출돼 있는데 환경부가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거 강구하거나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학교는 또 교육부가 있어 가지고 실질적인 시설개선사업은 교육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거나 또는 같이 조사하거나 이런 정도는 하는데 저희가 그 시설 개선까지 해 주기는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이게 법령에 의해서 환경부가 예산 확보를 해서 교육청에 넘겨서 교육부에서 조사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면은 환경부 소관이고 석면안전관리법에서 관리되지만 특히 학교 문제는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교육부 소관이라서. 그래서 환경부가 학교 환경을 할 수는 없지만 석면 관리는 환경부 소관이기 때문에 교육부와 환경부가 업무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석면이 진짜 1급 발암물질이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위원장 김영주** 여기에 대해서 좀 대책 마련해 주시고요.

고용노동부장관님께서도,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는 겁니다, 석면은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그런데 신고 시 학교 이름을 게재하지 않고 학교 석면 실태를 고용노동부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저희가 국무조정실에다가 특별히 부탁을 해서 할 건데 1급 발암물질이 우리 아이들이 20~30년 뒤에 어떻게……

지금 학교 교사가 작년에 아홉 분이 이 석면에 의한 암으로 돌아가신 것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번에 그 발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장관님이나 고용노동부장관님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갖고 대책을 만들어 갖고 저는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환경부장관님께서 교육부하고 요청을 해서 갖고 이에 대한 대책을 좀 만들어서 저 위원장에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도 이게 같이 소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함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논의해서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이인영 위원님, 뭐 얘기하실 것 있으십니까?

○**이인영 위원** 환경부장관님,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법안 의결하고 또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어서 자세히 여쭙 보지는 않겠는데 사실만 저는 확인하겠습니다.

한강청에서 ‘에코폴리스 양수리 조성계획안’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보도가 나와 가지고 저도 해명을 받았는데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없이 그냥 생각하는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 어떤 발상 단계, 착상 단계?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이인영 위원** 그런데 그 착상이나 착안도 이전에 합의했던 그런 방향하고 일치해야지 그것을 벗어나는 착상이나 방안이면 굉장히 위험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증폭되거나 이런 것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일단 구상이 어느 정도 되면 지역사회하고 논의를 할 거니까요, 그 과정에

서 그 부분은 부합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실무자들이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저도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가 했더니 그게 없는 상태로 지금 되어 있어 가지고요.

○**이인영 위원** 아니, 그것 2012년에 한참 문제가 있었을 때 수원교구의 이용훈 주교님 중재로 해서 두물머리를 생태학습장으로 조성하기로 했던 이런 사안들은 이런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벗어나고 그 계획을 근본적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어내는 이런 착상이나 착안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정부로서 온당한 태도가 아닌 것 같은데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하여튼 그 부분은 아직 구체화된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유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2012년 8월의 그 약속은 여전히 정부로서 유효합니까, 안 합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도 그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이게……

○**환경부장관 윤성규** 제가 지금 차관한테 물어보니까 국토부하고 합의를 했다 그리고 환경부하고 합의된 것은 아니라고 그러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한강청이 국토부……

○**환경부차관 정연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제가 알고 있기는 4대강 사업을 하면서 4대강 사업의 주체가 국토교통부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카운터파트로서 계속 논의를 했었고 한강국토관리청에서 했었기 때문에 우리 한강유역청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했고 국토관리청에서는 아마 합의사항을 준수를 할 거고 우리 환경부에서는 다른 지역에 대해서 아마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구상 단계이기 때문에……

○**이인영 위원** 두물머리가 해당이 되면 그것은……

○**환경부차관 정연만** 충분히 그것에 합당하게 추진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인영 위원** 그러니까 2012년 8월의 약속을 준수하는……

○**환경부차관 정연만** 저희들은 그 당시에 환경

부하고 합의를 이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이인영 위원 아니, 어쨌든……

○환경부차관 정연만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쪽에 합의된 내용이 준수되어야 된다면 환경부도 그 조항을 충분히 협의를 거쳐 해야 될 사안이지 한강유역청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사안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인영 위원 그러면 그것을 준수하는 게 맞는 거지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그것은 장관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끔 앞으로 사업을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주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인영 위원 죄송합니다.

자초지종을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했다가 45분에 동물원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동물원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위원장 김영주 의사일정 제13항 동물원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공청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물원은 동물을 사육하면서 관람의 형태로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동물의 습성 등 생태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할 뿐 아니라 야생된 동물의 보호 및 증식 등 종의 보존 역할까지 수행하는 소중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동물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별도의 법률은 없으며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 등은 건축

법에 따라 민간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등에 따라 동물원·식물원·수족관 등으로 설립·운영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동물원 등은 적절한 사육시설 기준도 없고 시설이 열악하여 동물의 건강이 악화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육 관리가 부실한 경우에도 처벌기준이 없는 등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점검해 보고 동물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동물원에 사육되는 동물의 적절한 사육환경 조성 등 사육동물 관리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봄으로써 동물원의 올바른 운영과 사육동물의 복지를 구현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오늘 공청회 대상 법률안은 장하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원법안, 양창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원 관리·육성에 관한 법률안, 한정에 의원이 대표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3건의 법률안입니다.

그러면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과 참고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과 참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개를 받으시면 잠시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술인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위원장석을 바라보고 왼쪽부터 신남식 서울대학교 교수님입니다.

이항 서울대학교 교수님입니다.

이기원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 이사님입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님입니다.

(진술인 인사)

다음은 참고인입니다.

이민호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입니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입니다.

(참고인 인사)

다음은 오늘 공청회 진행 순서와 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해 드린 순서대로 네 분의 진술을 모두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알려 드린 바와

같이 10분 이내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고 더 필요한 분은 더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진술인과 참고인 상호 간에는 질문과 토론이 허락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술인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의 신남식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신남식 저는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야생동물의학과 동물행동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동물원과 동물복지에 관심을 가지시고 법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물원 법안 논의에 앞서 1985년 12월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가 처음 창립할 때부터의 결의문을 살펴보았습니다.

결의문에는 종의 보존을 위한 공동 번식 노력, 동물 분양의 우선, 지식 및 기술정보의 교환, 교육보급활동 전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홍보를 다뤘고 협회의 정관에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30년 전에도 종 보존을 동물원 운영의 최고의 목표로 정하고 있음은 동물원 운영 당사자들에게는 그렇게 놀라운 것이 아니며 앞으로도 이러한 방향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일본동물원수족관협회가 1939년도에 설립되었고 미국동물원수족관협회는 1924년에 설립된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동물원수족관협회는 그 설립에서부터 해외 선진국과 50~60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물원은 창경원을 시초로 해서 100년이 넘었습니다마는 1984년 서울대공원 개장이 현대적 동물원의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현대적 동물원의 역사도 30년 정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동물원과 대학에서 35년간 야생동물과 함께했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발의된 법안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 위주로 의견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물원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원 허가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동물원에 심사하여 면허를 주는 영국의 동물원 관련 법안

과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영국의 경우에는 면허를 주기 위한 점검 사항이 담당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본 법의 허가제에서의 점검 사항은 전문가가 아니라도 획일화된 내용으로 전문가가 판단 점검하기보다는 일반 개인이 점검할 수 있을 정도로 시설의 표준화가 마치 공장화된 동물원을 추구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한 허가의 주체인 환경부장관 산하의 동물원 등관리위원회의 설립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 목적이 동물원의 육성 발전인지 규제와 통제를 하려는 것인지 모호합니다. 동물원 등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면 동물원을 발전적으로 끌어내가기 위해서 동물원 관리 전문가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정 사육환경 기준 마련 및 그에 따른 허가에 대해서는 기준 마련보다는 복지 규범 제정과 같은 상징적인 기준을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획일화된 규정이 아닌 규범을 제시함으로써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되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에 대해서 논의를 함에 있어서 그 동물들에게 일률적인 면적과 크기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가 필요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의 일률성·획일성은 짝어내는 공장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 어디에서도, 영국에서조차도 한 마리당 얼마의 실내 사육 면적이 필요하다고 법적으로 제정된 곳이 없습니다.

2014년 7월에 발의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나온 CITES 관련 동물원 실내사육장의 면적은 야생동물에 대한 실무 경험이 있는 교육자로서 의문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에도 사육장 면적을 법으로 규격화시킨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규격화시킨 것은 동물원의 자율성을 완전히 배제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미국동물원수족관협회의 권고 사항으로 되어 있어 동물원의 사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순환이 되게 규제를 완화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현대 사회의 추세라고 할 수 있겠으나 이러한 조치는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

각도 듭니다.

관람 목적의 인위적 훈련금지 조항에서, 예전에 서커스에서 볼 수 있었던 단순한 묘기만을 보여주기 위해 복지 개념이 배제된 훈련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물에 있어서 훈련이라는 것은 배움의 한 형태이고 배움은 실습이나 경험을 통해서 행동이 바뀌는 것을 말하며 이 실습이 사람에게 의해 행해졌을 때 훈련이라고 합니다.

동물원에서 훈련은 동물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물원 동물의 복지 활동의 기본이 되는 동물 행동 풍부화 프로그램의 근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훈련 결과를 발전시켜 관람객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동물의 생태와 행동에 대한 지식과 함께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증진시키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람 목적의 인위적 훈련금지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모호하고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육 부적합 동물의 지정 건에 대해서는 넓은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것을 이슈화시켜서 법안을 상정하는가는 국의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동물원마다 처해 있는 현실은 다릅니다. 해외에서 코끼리를 적절한 환경이 있는 곳으로 옮겨서 사육하는 등의 이야기는 그 나름의 합의에 의해서 진행된 것입니다.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 규제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사육사 및 관람객의 안전에 관한 사항은 2011년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만들어진 동물원 근무자의 안전작업에 관한 지침이 있습니다. 영국의 안전지침을 대부분 인용하고 있는 수준이지만 점차 우리의 실정에 맞게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물원 관리·육성에 관한 법률안 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는 동물원의 육성과 지원 발전을 위한 근거 법률로 그 역할이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동물원의 설립 신고에 대해서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최근의 동물원 관련 보도를 보면 동물원의 동물 학대나 동물 관리 부실로 연결시키려는 부분이 많이 있어 안타깝습니다.

서울동물원의 제돌이 건은 동물원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 불법 포획된 돌고래가 동물 공연에 이용된 케이스로 도입 경로의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동물원의 동물 학대로 몰고 가고 나아가 동물 공연 반대, 자연 재방사로까지 확대되는 우를 범하고 있음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또한 동물 사육사의 안타까운 사고를 동물에 대한 안전의식 미흡이 아닌 사육환경 불량에 대한 동물의 의지인 것으로 포장한 것은 동물의 생태를 직시하지 않고 감정적인 여론에 기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야생동물 전문가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 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논의하고 대책을 세운다면 동물원 관계자나 관계 전문가들도 반대할 이유가 없고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야생동물의 사육과 관리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외국 동물원의 전시 형태와 보도된 자료를 정리하여 전문가처럼 이야기하고 수십 년간 야생동물을 사육한 전문 사육사나 관리자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고 사육환경을 규제하고 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고 모든 법안이 감시와 규제보다는 육성 발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가 제기된 것도 그간 동물원 수족관협회의 업무가 세밀치 못하고 대비치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원수족관협회에도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회에.

빠른 기간 내에 조직을 정비하고 협회의 초창기에 진행됐던 결의를 명확히 이행하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이것을 시작으로 동물원의 사육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는 회원 기관의 관리 감독 역할에 소홀히 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협회는 회원사와 야생동물에 대한 전문가 집단으로서 그 역할을 명확히 하고 국민적 합의와 담당 정부부처와의 협력을 통해서 협회가 선진 외국의 사례와 같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도움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동물원수족관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14개 동물원 중 10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원입니다. 대부분의 동물원은 시설이 열악하

고 지자체에서 투자를 아끼고 있습니다. 연간 수십억 수백억의 재정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누적 으로서는 상당한, 수천억의 재정 적자를 지금까지 기록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에 투자비를 합친다면 엄청난 금액이 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동물원에는 연간 1600만 명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1600만 명이 입장하는 것을 재정자립도가 미흡한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는 것보다 사립동물원을 육성해서 국민의 레크리에이션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좋다고 저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이 각 부분의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규제와 통제, 강제 시행보다는 지원과 장려에 초점을 맞추어 동물원의 육성 발전과 야생동물의 복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대학교 이항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이항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이항입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신남식 교수님과는 같은 과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남식 교수님은 동물원의 운영을 자율에 맡겨 달라는 입장이셨고 저는 조금 다릅니다.

저는 동물원법을 조금 더 강력하게 해서 동물원 허가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 21페이지부터 자세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 내용을 요약하고 왜 그런 것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동물원의 목적 부분을 25페이지까지 제가 서술을 해 봤는데요, 그것은 신남식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물원의 목적은 동물의 행복이라든가 동물의 복지 이런 것보다는 동물 종의 보전 또는 생물 다양성의 보전이 돼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거기에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25페이지에 보시면 다섯 가지를 제안을 드렸는데요.

첫째는 허가제가 반드시 돼야 되겠다, 최소한의 어떤 기준을 만족시키는 동물원만이 허가를 받아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게 돼야 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27페이지에 보시면 그것과는 별도로,

그러니까 허가제는 허가제대로 하고 그 외에 그것보다 더 차원이 높은 동물원 인증제를 도입을 하자고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허가제를 할지라도 그 허가 요건에는 최소한의 기준만을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계적인 동물원은, 지금 그런 최소한의 기준만을 만족시켜가지고는 지금 세계적 추세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물원을 진정으로 국제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적이면서도 그러나 또 외부의 인사가 관여를 하는 그런 동물원 인증원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도록 동물원법에서 근거를 마련해 두고 운영을 하고 그 인증을 받은 동물원만이 진정한 종 보전 기관으로서 기능을 하고 지원을 해 주자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동물원법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원만이 아니라 28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야생동물을 사육하는 모든 형태의 사육시설의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원이라고 하지 않으면서도 야생동물을 사육하는 수많은 시설들이 지금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거든요. 심지어 국가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생태원도 있고요. 그런 어떤, 국가가 하든지 개인이 하든지 공공기관이 하든지 간에 야생동물을 사육할 때는 일정한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는 그런 정신이 구현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동물의 복지도 규정을 해야 되겠지만 사람의 안전, 특히 시설뿐만 아니라, 동물과 사람 간에 오고 갈 수 있는 많은 인수공통질병들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국내 동물원에서 이런 질병들이 조사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이 문제가 되고 있었는지 또 앞으로 될 것인지 그런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법 마련할 때 참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종 보전 기관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동물원들은 국가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마련했으면 합니다.

이런 것이 제가 말씀드린 골자고요.

그런데 왜 이런 동물원의 기준이 마련돼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자료 26페이지에 제가 서술을 해 놓기는 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아니냐, 사람이 아무리 동물이지만 우리가 동물이 학대받는 것을 그냥 두고 봐서는 안 되겠다는 거고요. 특히 우리 한민족은 흥부의 후손들이 아닙니까? 야생동물이라고 그냥 함부로 대하지 않았거든요. 제비 다리를…… 야생동물에게 자비를 베풀었던 사람이 복을 받는다 이게 우리의 정신이라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은 실용적인 이유인데 국익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야생동물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다, 왜냐하면 사실은 외국에 나가 보면 우리나라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이 많습니다. 지금은 한류도 있고 삼성 스마트폰도 있고 현대차도 있고 해서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 뿌리 깊은 인식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개고기 먹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개는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외국인 하고…… 또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이 입 밖으로 잘 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의를 차리기 때문에 기분 나빠할까 봐서 별로 얘기는 안 하지만 한국은 개고기 먹는 동물학대국 또는 야만스러운 나라 또는 잔인한 사람들 이런 이미지가 상당히 지금 뿌리가 박혀 있습니다. 우리한테 잘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더 무섭거든요. 그분들이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하면서도 잠재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마도 개고기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동남아 관광 가서 곰 쓸개 먹는다고 보신관광하고 그다음에 또 아마 북한 이미지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하도 엽기적인 일을 많이 하니까. 그다음에 또 영화도 일조를 할 것 같습니다. 울드보이 같은 데서 산낙지를 막 먹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이것 외국인들이 볼 때는 굉장히 혐오스럽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 아무렇지도 않게 먹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한국은 잔인하고 동물을 고려할 줄 모르고 이런 이미지가 고착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이 개고기 문제 건드리기가 힘듭니다. 법을 다루시는 분들 아무리 공리를 해도 접근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다른 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 문제를 다른 면에서, 국익을 고려해서 한국이 동물복지를 위해서 이제는 획기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주기 위해서는 그냥 조금 신경 쓰고 있는 이런 정도로는 되지 않고 좀 강력

한 허가제를 해 가지고 동물복지 수준을……

그러니까 동물원은 굉장히 파급력이 크거든요. 많은 사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동물원에 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도 많이 찾고요. 그분들에게 한국에서 개고기는 지금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동물원 문제는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구나, 어떤 다른 나라보다 더 획기적인 안을 지금 내놓고 있구나 이런 인상을 준다면 그 문제를 희석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그러니까 국익 측면에서도 동물원법이 반드시 허가제로 가고 일정한 수준, 기준을 갖춰야만이 동물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꼭 이번에 통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 이기원 이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이기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은 아시다시피 공익적 상업시설입니다. 그래서 일반대중에게 전시나 교육을 통해서 자연 생태와 동물의 습성에 대해서 홍보하고 동물의 보호, 증식에 관한 연구로 멸종위기생물의 종 보존에 현재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동물원·수족관 운영 및 동물의 반입·사육 관련해서 법률이 통합되어 있지 않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동물보호법 등에서 부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복 적용되는 어려움 또한 존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동물원 및 수족관 업계에서는 동물사육 관련 법률의 통합 및 신규 규정을 통하여 사육동물의 관리를 체계화하고 동물원 등을 건전하게 운영·육성하자는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단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주요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동물원 법안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동물원 등을 설립하려는 자는 사육면적 등 사육 환경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사육시설 등록에서 정하고 있으며 중복적으로 법이 적용될 경우 신규 기준을 위한 공사 등을 수행하기 위한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 법안 제5조제3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 및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동물을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였는데 이와 같이 명확하지 않은 조건은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큼니다. 따라서 허가사항 및 각종 관리기준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동 법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육 부적합 동물을 지정하여 사육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사육 개체가 만약에 해당 동물로 지정될 경우에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동 법안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동물원 등은 관람을 목적으로 동물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훈련시킬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인위적인 방법으로 훈련시키는 행위에 대한 정확한 의미의 확인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의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훈련 및 공연의 금지는 현재 합법적으로 운영 중인 동물공연산업계의 폐업까지 불러올 수 있는 조항으로 이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집에 다 명기가 되어 있어서 그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제 의견은, 제가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를 대표해서 나온 것은 아니고요, 한국동물수족관협회의 이사 중의 1명으로서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짧은 시간에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조희경 한국에서 동물운동이 본격화된 게 16년 전입니다. 그 사이에 동물보호법은 계속 개정되면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 불과 16년 만에 동물보호단체들의 성장은 아주 급격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동물자유연대나 뒤에 나와 있는 동물보호 카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연간 순수 회원 수입금으로 한 20억에 의해서 운

영이 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 사회가 얼마큼 동물보호 인식이 확산이 되고 있고 사회적으로 많이 그런 부분들이 정착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가늠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동물보호가 많이 발전되고 있고 시민의식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물원하고 수족관만은 그동안 계속 법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법률이 통과되어서 동물원 및 수족관의 동물들의 복지 기준들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물에 대한 국제적인 동향을 살펴보면 유럽연합 같은 경우 1997년 암스테르담조약에서 동물을 지각력 있는 존재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9년 12월 1일에 발효된 리스본조약에서 ‘유럽연합은 농업, 어업, 운송, 역내시장, 연구, 기술개발, 우주정책 분야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회원국은 지각력 있는 존재로서 동물복지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동물보호를 헌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국제적인 동향이 이렇게 되는 것에 우리나라도, 우리 같은 경제적 수준이 있는 나라라면 충분히 발맞출 수 있는 수준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저희 동물보호단체 같은 곳에 동물학대 제보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주로 반려동물—개, 고양이—의 학대 제보가 이어지는데 최근 들어서는 동물원 제보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많은 사람한테 노출될수록 그만큼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법이 얼마나 절박한지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나누어서 주요 제안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반드시 동물에 초점을 둔 법안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통을 느끼고 지각 있고 감각능력을 가진 존재로서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린 아동이나 이런 약자들에 대해서 계속 보호하는 추세가 있고 규제가 강화되는 것은 그들이 자신을 스스로 대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대신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동물도 그런 고통의 감각능력이 있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가진 존재로서 인

정이 된다면 우리 역시 약자로 보고서 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인가…… 우리나라만 해도 연간 9억 마리의 동물들이 인간 때문에 희생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700억 마리의 동물들이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책임의 의무를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동물복지가 가장 초점이 된, 동물이 초점이 된 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물원 육성 및 진흥에 관한 것은 사적인 영역입니다. 지금 재산권의 문제가 대두될 만큼 기업의 문제인데 이것을 우리가 국민의 세금으로 해가지고 육성시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필수 사안으로서는 지금 동물원하고 수족관 관리 주체가 다 쪼개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률적으로 하나로 통일해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동물원의 등록 기준을 보면 공원, 박물관, 시사업소, 종합휴양업, 종합유원시설, 수목원, 전문휴양업, 민속박물관, 자연사박물관 이런 식으로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산재하고 관리가 안 되고 난립하고 있는 동물원들을 한군데서 관리할 수 있는 동물에 초점을 둔, 관리 주체를 정할 수 있는 이런 규정들이 법에 마련되기를 꼭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또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해서는 반드시 허가제를 도입해야지 됩니다. 동물원이 종 보존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동물의 수와 반입 절차 그다음에 반출 절차 이런 부분들이 다 기록이 되어야 되고 개체 증식에 따른 변동사항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반드시 다 기록이 돼서 야생동물이 어디에서 어떻게 길러지는지도 모르는 이런 빈 공간이 생기는 일들을 없애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물원을 반드시 허가제로 해서 이 모든 것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요.

저희가 지난 4년 동안 동물원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물론 대기업도 사실은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별로 큰 차이는 없지만 사회적 책임의식이 덜한 이런 중소기업, 영세기업일수록 동물 관리는 정말 비참할 정도로 처참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생명체를 가진 그런 동물들로서 바라보지 않고 도구화된 상업적 이익의 목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처참한 환경이 되어도 아무

런 규제가 없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에서 이 법이 반드시 허가제를 통해서 그런 동물들도 관리될 수 있는 기준들을 마련하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허가 시 필수 설립요건 이런 부분들이 또 동물 본연의 습성과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갖추도록, 기본적인 요건들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위임할지라도 반드시 법 내에서 언급이 돼서 그런 부분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사육 부적합 동물이 있습니다. 자연 상태의 습성이나 종 특성상 인위적인 공간에서 살 수 없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특히 돌고래 이런 동물들은 시설 내에서 출산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야생에서 잡아서 그 비좁은 수족관에 가둬야 되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육 부적합 동물, 북극곰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동물들은 더 이상 시설 내에서 사육하지 않도록 그런 부적합 동물의 지정이 필요하고요.

훈련을 하는 것도 동물의 수의학적 처치를 위한 훈련이라든가 행동풍부화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 외에는 훈련은 반드시 금지시킬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이번에 마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동물원 동물들의 범위에 대해서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야생동물로만 한정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동물원에 가면 야생동물이 아닌 동물들이 많습니다. 일단 관람의 목적으로 전시되는 동물에 대해서는 다 동물원 동물로 정의해서 동물원을 다 같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내용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물원 허가제는, 저희들이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한은경 교수님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동물원 허가제에 우리 국민들의 91%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인식이 어디에 있는지, 국민들은 점점 앞서 가고 있는데 우리 법이 앞서 가지 못한 부분에서 진실되게 다시 한 번 검토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동영상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동영상은 아주 낮은 수준에서의 영상입니다. 실질적으로 가면 정말 더 눈뜨고 볼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은데요. 동물원 동물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잠시 보여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전형적인 이상행동입니다. 비좁은 공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계속 앉은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생에서 충분히 뛰고 살아야 할 동물들이 시설 내에서 저렇게 비좁은 공간에서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콘크리트 안에서 저러고 사는 겁니다.

이 바다사자는 자연에서 있어야 할 바다사자가 유리어항, 관에 있기 때문에 저렇게 스테인리스 기둥을 저렇게 계속 핥는 저런 이상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불곰인데요. 이 유럽불곰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이 선명하지 못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계속 먹은 거를 토하고 먹은 거를 토하고 하면서 계속 저런 이상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 핥는 게 자기가 먹은 거를 토해내면서 계속 핥는 겁니다.

이 코끼리 역시 저렇게 넓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야생에 살던 코끼리들이 간히는 순간 저렇게 많은 이상행동을 보이는 겁니다.

이것은 돌고래인데요. 돌고래가 야생에서는 절대로 바위에 올라가는 행동을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료하기 때문에 수족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계속 저렇게 위에 올라와서 돌고래가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깜깜해서 좀 잘 안 보이는데요. 저렇게 돌고래가 계속 위에 올라와서 저 위에서 빙그르르 돌다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만 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은 이 영상을 약 2분 동안 보시는 동안 어쩌면 지루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동물들은 10년에서 20년을 저렇게 비좁은 공간에서 갇혀 삽니다. 저 동물들한테 조금 더 좋은 환경 그다음에 더 이상 야생에서 붙잡혀 오지 않는 그러한 법 이러한 것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을 많이 이 자리에서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동물원들이 종 보존의 기능을 앞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종 보존의 기능을 하는 동물원은 아주 극히 미약합니다. 또 생태교육이라고 앞세워 내세우지만 생태교육이 아니라 단지 볼거리, 재미있는 볼거리 제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동물의 보호와 종 보존 기능의 목적에 부합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법률을 통해

서 많은 부분들이 재정리됐으면 좋겠고요.

국제적으로는 동물들을 비인간 인격체로 규정하면서 많은 동물복지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받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신남식 교수님!

○진술인 신남식 예.

○김용남 위원 법안에 보면, 장하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보면 관람목적의 인위적 훈련 금지 조항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저도 다른 곳에 다니면서 범고래쇼나 이런 것을 재미있게 본 기억이 있는데 아무래도 인위적인 훈련을 금지하면 그런 수입은 급감하겠지요, 사실은? 그런데……

○진술인 신남식 수입보다도요, 그 훈련을…… 아까 그 영상에서도 보았지만 동물원의 동물하고 야생 상태에 있는 동물하고는 분명히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동물원에 있는 동물이 물론 야생에서 살 수 있는 동물도 있지만 야생에 적응 못하는 동물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동물원에 있는 동물은 동물원 내에서 건강하고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육사는 동물에 대해서 접촉을 시도하고 환경풍부화 이러한 것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의 일종으로서 훈련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지요. 그렇게 볼 때 그런 개념으로서, 수입보다는 그러한 개념으로서 오히려 동물의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개념으로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용남 위원 어쨌든 우리나라의 경우에 교수님 보시기에 종 보존 기능은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진술인 신남식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동물원에서 종 보존 역할을 주도하고 있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초로 1994년도에 환경부에서 잘 아시겠지만 월악산에 산양을 방사시키면서 복원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동물원에서 최초로 시도한 거고 환경부에서 또 시도하고 있는 지리산 반달가슴곰도, 물론 수입한 곰도 있지만 서울대공원 동물원에서 번식된 동물이 이입된 사례가 있고 또한……

○**김용남 위원** 마이크가 꺼졌네요.

○**위원장 김영주**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진술인 신남식** 또한 소백산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우의 복원프로그램에도 동물원에서 증식된 여우가 투입되는 등 국내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멸종 위기종의 복원사업에는 동물원에서 번식된 동물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김용남 위원** 그러니까 동물원의 입장수입을 재원으로 해서 종 보존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진술인 신남식** 사립동물원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사립동물원의 경우에요?

○**진술인 신남식** 물론 국·공립동물원도…… 국·공립동물원이라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동물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동물원에서도 그러한 비용을 가지고 충당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항 교수님께, 지금 동물원뿐만 아니라 28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을 사육하는 모든 형태의 시설과 운영기준을 규정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그러면 각종 동물의 사육장까지 다 허가제 내지는 최소기준을 마련해서 허가제를 하자는 말씀인가요?

○**진술인 이항**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정 수준 이상의 동물원만 기준을 마련한다면 그 이하의 동물원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것들이 엄청나게 난립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많이 생기고 있고요, 많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런 동물들이 진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물사육시설에 대한 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폐쇄조치를 해서라도 그런 것을 막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용남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것은 그렇다면 만약에 그게 된다면 곰사육장 같은 것 일정 규모나 수준 이하의 것은 폐쇄해야 된다는 말씀 같은데……

○**진술인 이항** 곰사육장은 지금도 환경부에서 폐쇄하고 있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용남 위원** 모든 형태에 대해서 다 그렇게 하자?

○**진술인 이항**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관람을 제공하지 않는 부분까지요? 관람에 제공하지 않는 것도……

○**진술인 이항** 관람하는 것도 마찬가지로요. 관람하든 안 하든……

○**김용남 위원** 상관없이?

○**진술인 이항** 동물이 받는 고통은 마찬가지로거든요.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나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비례의원 장하나입니다.

저도 첫 질의는 신남식 교수님께 하고 싶습니다.

지적하신 내용 중에 관람목적의 인위적 훈련금지라는 표현이 부적절한 점 지적을 해 주셨고요. 중복이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공청회 자료집 17페이지에 보면 교수님께서도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가 중심이 되어서 자율적으로 서커스 형태의 동물공연은 반대하고 또 이런 공연을 위해서 동물에게 고통 주는 행위는 반대한다 이런 천명을 할 수 있다,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써 놓으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법의 취지에는 반대하지 않는 것 같고 거기에 적합한 이런 법조문 이런 표현을 순화해야 되겠는데요. 교수님께서서는 이런 관람목적의 인위적 훈련금지 대신에 어떻게 표현하면 이 법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진술인 신남식** 모든 것은 동물원에 있는 동물은 관람의 목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람의 목적이라는 것을 제외를 하는 것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장하나 위원** 공연, 동물의 공연이라고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한정하면 좋겠습니까?

○**진술인 신남식** 그거를 금지한다는 거보다는 그 한계를 정하기가 상당히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겁니다, 법으로.

○**장하나 위원** 그러면 영상 준비된 것 좀 틀어 주시고요.

어렵기는 한데 사실은 이 자리에서 공감대 형성은 지금 동물도……

○**진술인 신남식**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장하나 위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동물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실 보여지는 것 이면에 있는 학대, 그러니까 훈련과정의 학대

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 법으로 막을 것인가 이런 논의를 하는 자리 같습니다. 그래서 동물원에…… 동물원을 규제하고 통제하자는 거는 아닌 거 같고요. 동물원이 어떻게 동물 학대를 안 하고 유지될 것인가 그 점을 모색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진술인 신남식 사실 포괄적으로 동물보호법에서 다루는 것이 좋을 거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장하나 위원 아, 동물보호법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어두운데 원숭이를 걷게 하기 위해서 원숭이 앞발을 묶고 원숭이에 목줄을 해서 끌고 다니는 모습이고요. 영상 멈춰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숭이가 다른 동물들보다는 잘 걷고 그러니까 영특해서 이런 공연을 하나보다 하지만 아까 같은 영상들은 영국의 ADI라는 영국의 동물보호단체가 우리나라의 원숭이학교라는 데 잠입을 해서 찍어서 제공을, 동물자유연대에 제공을 한 영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항 교수님 지적하셨듯이 전 세계적으로도 동물학대국으로서 한국 사례를, 조망하고 있고요, 그래서 외국단체도 국내에 저렇게 잠입해서 르포를 만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수님께 지금 당장 즉답을 못 주신다 하더라도 관람목적의 인위적 훈련이라는 표현이 좀 부적절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표현이, 그러면 저런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지 같이 모색을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고민을 줌……

○진술인 신남식 그러니까 동물학대라는 것이 동물원 동물이거나 이런 야생동물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동물에 관여된 문제가 아니겠어요?

○장하나 위원 그렇지요.

○진술인 신남식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동물보호법이라는 법이 있으니까 그 법에 추가를 시키든지 어떤 조항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관리해야지 동물원법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장하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후에 답변시간 드릴 수 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반려동물의 경우에 공연 같은 것들을 집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밖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어떻게 하는지 동물보호법에서 규제할 수 있는 거와 이렇게 동물원에서 아예 공연을 목적으로 하고 있

는 경우와 너무 상황도 다르고 그 강도도 다르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동물원법에서 사육환경 포함해서 이런 동물공연에 수반되는 훈련까지 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도, 교수님도 공연 반대하는 의견은 같이하시는 만큼 어떻게 하면 법을 잘 만들 수 있을지 의견을 이후에라도 주시기 바라구요.

또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거는 국가별로 동물 공연을 안 하고 있는 이런 현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음 페이지 죽 넘어가 보시지요. 내용을 다 읽어 드리기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41개 국가 그리고 이러한 동물공연을 금지한 연도를 보면 다 2000년대 초반에서 2010년까지,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논의는 최근에야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이것이 아주 특이한 몇몇 국가가 아닌 하는 게 아니라 유럽에서 중남미까지 아주 광범위하게 이런 동물쇼 금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환경부에서도 나오셨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해외 법 사례나 금지 사례는 환경부가 더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시고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발맞출 수 있겠다고 보여지는데 자연보전국장님, 이런 해외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셨는지, 세계적으로 허가제를 하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환경부 입장을 간략하게만 주십시오.

○참고인 이민호 저희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까지는 아직 없고요. 일부만 조사가 되어 있고, 허가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기는 사실 등록제 검토를 했었습니다. 등록제 검토를 했었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등록제도 임의등록제라는 것이 있고 의무등록제라는 게 있고 그런데 저희가 사실 초안 자체…… 내부적으로는 임의등록제라는 것도 검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의무등록제라든가 다른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렇게 닫혀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장하나 위원 그러면 허가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참고인 이민호 글썄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했던 것들은 임의등록제 중심으로 검토를 해 왔기 때문에 허가제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장하나 위원 그러면 임의등록제 했을 때 등록을 안 하는 업체들 특히 영세한 업체들이 많을 거고 또 공교롭게도 저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도 영세한 그런 동물원에서 벌어진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셨나요, 임의등록제 고민을 하실 때?

○참고인 이민호 임의등록제를 검토했던 사유는 사실은 규제보다는 지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등록을 함으로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인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검토를 했던 거고요.

의무등록제라면 말씀하셨듯이 작은 동물원까지도 다 등록이 되고 관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의무등록제와 임의등록제 다 각각 장단점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하나 위원 그러면 지원금을 주면 자율적으로 등록을 할 것이라라고 생각하셨나요?

○참고인 이민호 현재까지 저희가 동물원에 관해서 특별한 관리법령이 없는 상태에서.....

○장하나 위원 예, 없었지요.

○참고인 이민호 드러난 첫 단계였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하나 위원 그러면 허가제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세계적으로도 허가제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장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성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동 위원 신남식 교수님!

동물을, 야생동물을 동물원에서 사육하면 동물의 본능에 어긋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학대가 되는 것이고 그냥 야생에서 그대로 살게 하면 보호가 되는 것입니까?

○진술인 신남식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권성동 위원 그렇지요? 야생에 놔두었을 경우에는 다른 동물에 이렇게..... 물론 자연질서지만 잡아먹힐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느 것이 보호인지는 잘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모 교수가 그렇습니다. 동물학을 전공했던 모 교

수가 돌고래 같은 경우에 한 번 질주하면 5km를 간답니다, 돌고래가. 그래서 사방 5km 정도 되는, 그러니까 25km² 되는 그런 수족관이 아니면 그것은 학대고 거기에서 돌고래의 공연을 보면서 박수치는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 지적은 옳은 지적입니까?

○진술인 신남식 부분적으로는 맞을 수 있지만 저는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권성동 위원 그리고..... 말씀하십시오.

○진술인 신남식 동물원의..... 야생동물의 행동반경은 야생 상태에서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돌고래가 바다에서 뛰어 놀고 그런 헤엄치는 모습을 아름답다고 그리고 철새가 천수만이나 이런 데에서 수만 마리가 군무를 하는 거를 보고 아름답다고 그러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아름다움을 인간에게 선사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고 먹이활동 하고 안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권성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책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답변해 주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돌고래 공연을 제가 미국 가 봐도 공연하고 있고 호주도 하고 있고 남아프리카공화국 가도 하고 있고, 그거는 그 나라 사람들이 학대다 이렇게 보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 제돌이를 불법포획 한 거를 갖고 마치 공연하는 것을 학대라고 특정 언론이나 이런 데서 몰아치기 하던데 그게 학대입니까?

○진술인 신남식 동물원에 있어서는 정상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상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권성동 위원 정상행위지요?

○진술인 신남식 예.

○권성동 위원 우리가 개를 예를 든다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견 같은 경우 또 군견 있지 않습니까?

○진술인 신남식 예.

○권성동 위원 군견, 탐지견, 마약탐지견 엄청난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까?

○진술인 신남식 예.

○권성동 위원 사실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훈련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진술인 신남식 예.

○권성동 위원 그것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학대예요. 왜냐? 개가 무슨 탐지하는 의무를 갖고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학대지만 다 우리 인간생활에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진술인 신남식 실험동물에서도 그러한 예를 들 수가 있는데 더 큰, 인류와 동물의 더 큰 이익을 위해서 최소한의 말하자면 그런 희생이라고 할까 그런 거는 감수하는 추세고 또한 인간을 위해서 노력하는 안내견이나 경찰견이나 이런 탐지견이라든지 가이드독(Guide Dog) 같은 경우도 훈련을 많이 시키는 편입니다.

그런 거를 볼 때 인간과 동물의 공생…… 서로 간의 상호 공존하는 아름다운 공존으로 봐야지 그거를 동물학대다 이렇게 본다면 인간과 동물은 영원히 공존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권성동 위원 개나 고양이는 어떻습니까? 가축으로 분류되지요?

○진술인 신남식 예.

○권성동 위원 그러면 들개하고 들고양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처음부터 들개로 태어나서 들개로 지금까지 살아온 그 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술인 신남식 물론 그런 개도 외국에는 있습니다마는 국내에서는 유기동물이 주로 들개나 들고양이로……

○권성동 위원 아니 유기동물 아닌 경우에, 유기동물의 자손, 유기동물의 자손은 처음부터 야생에서 태어나고 야생에서 자라면 그게 가축이 되는 거예요, 야생동물이 되는 거예요?

○진술인 신남식 야생성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렇게 된 동물들은.

○권성동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데려다가 집에서 조그만 3평짜리나 5평짜리 원룸에서 키운다고 그러면 그것도 학대 아닙니까?

○진술인 신남식 그거는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는, 반려동물의 하나로서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는 허용될 수 있는…… 충분히 허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성동 위원 그래서 이러한 면적을 갖고, 사육면적을 갖고 규제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선진국 중에?

○진술인 신남식 사육면적을 가지고 규제하는 것은 법으로 규정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미국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지만 미국 동물원수족관협회의 권고사항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원의 사정에 따라서 탄력

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성동 위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이민호 국장 나오셨는데 현재 민간동물원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참고인 이민호 예.

○권성동 위원 있는데, 장하나 의원이 발의한 동물원법이 제정이 되고 구체적인 면적 규제 이런 거는 시행령에 위임해 냈지요?

○참고인 이민호 예.

○권성동 위원 그래서 시행령을 엄격하게 만들 경우에 과연 민간동물원 중에 그 요건에 적합한 동물원이 몇 개나 있을 거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 요건에 지금 적합하지 않는다고 그런다면 그 사람 기득권 뺏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거는 어떨 거 같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인 이민호 위원님 말씀하신 몇 개나 될 거냐 그거는 분석이……

○권성동 위원 왜냐하면 분석을 해야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재산권 침해가 되고 불이익을 주는 거기 때문에 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느 정도의 그런 기준을 갖고 있는지, 환경부에서?

○참고인 이민호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것들은 사실 규모가 있는 동물원에 대한 파악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작은 미니동물원 이런 거는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이 법에 의해서 등록 가능한 또는 허가 가능한 수준이 될지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사실이고요.

○권성동 위원 오케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권성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미 위원 아까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님께서 보여 주신 동영상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그와 유사한 곳에서 한 5년 남짓 구금이 되어 있었었고요, 그래서 저는 거의 죽을 뻔했었는데 그것이 당시 교도소에서는 정상행동이었어요, 인간이 죽을 뻔하기까지 하는데.

저는 동물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가 어떻게 공존하는가는 정말 기준을 제대로 마련을 해야 되고 누구에게는 거의

죽음과 같은 것인데 누구에게는 그것이 정상행위로 보여지는 이런 기준을 바꿔 온 것이 저는 선진국의 길이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영상을 보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에 제가 보여 드릴 영상은 협회장, 아까 굉장히 잘 운영하고 있다고 신남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협회장이 운영하고 있었던 주유동물원에서 바다코끼리를 폭행한 겁니다. 이거는 뉴스에서도 나와서…… 보여 주십시오.

(동영상 상영)

이제 꺼 주시고요.

사실 주유동물원에서는 바다코끼리 폭행 때문에 사회적 비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부속서1에 해당하는 삼악어를 날카로운 쇠붙이로 찌르면서 공연해서…… 이용해서 지난 3년간 환경부 폐사 신고한 삼악어 26마리 중 22마리의 폐사사유가 상처염증 악화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남식 교수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일에 대해서, 그것도 협회장이 운영하고 있는 동물원에서 발생한 이런 쇼를 위한 동물 학대에 대해서 협회가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여쭙 보고 싶습니다, 우선.

○진술인 신남식 제가 협회를 대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알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저런 것이 바로 동물 학대라는 것이지요. 저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러나 학대가 아닌 생태를 이용한 정상적인 동물행동풍부화 프로그램이나 조건적 훈련을 통해서, 이러한 선순환 훈련을 통해서 하는 데에 있어서 그것을 보여 주는 것, 그것을 금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동물 학대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은 아마 지금 시행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더라도 극히 일부분일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금지해야 되고.

두 번째로 아마 동물원수족관협회장직을 사의한 것으로, 현재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수미 위원 제가 왜 그것을 여쭙 보느냐 하면 발제문에서 교수님께서 1985년 12월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 결의문을 말씀하시면서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홍보를 다루었고, 그래서 잘하고 있다, 그런데 왜 동물원법이, 그것도 국가가 관리하는 게 필요하겠느냐라고 말씀을 주셔서, 사실은 1985년 이런 결의문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협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

하도 사회적 비난이 커지니까 회장이 알아서 그만두기는 하지요. 하지만 협회가 자율적으로 제제조치를 하든가, 문제 제기를 하든가, 개선 결의를 하든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

그런 상황에서 수십 년을, 어쨌든 목숨을 가지고 있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학대를 방치를 해 오고 있다는 점을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입장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저는 우리가 이 정도로 살면, 경제대국 11위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는 동물일지라도 우리가 공감을 하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그랬고요.

1분만 더 써도 될까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그러시고 발제문에도 나와 있는데 외국 해외에는 면적규정이 없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호주의 Exhibit Animal Protection Laws에서 동물의 최소 사육면적을 규정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미국의 동물복지법, 일종의 액트(Act)지요. 액트는 지침의 성격이 강하기는 하지만 사실상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이것을 참고해야 되기 때문에 강제규정이라고 보통 봅니다. 이것이 한국하고 법이 달라서 그렇기는 하지만.

그런데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님의 질의에 신남식 교수님은 해외에는 사례가 없다고 해서 이번에는 이항 교수님께, 저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 사육의 면적이라든가 심지어는 펜스 이런 것까지를 다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한번 이항 교수님께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진술인 이항 아마 신남식 교수님께서 좀 더 자세히 조사를 못 해 보신 모양인데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인도에 1991년에 동물원 관련된 법이 새로 만들어졌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아주 세세한 규정이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서 몇 m² 이상 되어야 된다는 그런,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호주도 있고, 미국도 영양류는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런 예가 제가 알기로 상당히 있습니다.

○은수미 위원 감사하고, 보충질의 할게요.

○위원장 김영주 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봉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홍 위원 자유연대에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료 11페이지 신남식 교수님 발제문에서 ‘수족관에 부여된 사명을 다함과 아울러 서로의 건실한 발전을 이룩한다. 1. 종의 보존을 위한 공동 번식노력, 2. 동물분양의 우선, 3. 지식 및 기술정보의 교환, 4. 교육보급활동 전개, 5……’ 나와 있는데 이거 전부 사람 중심입니까, 동물 중심입니까?

○진술인 조희경 동물원협회니까……

○최봉홍 위원 내용 자체가 전부 사람 중심으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술인 조희경 아니, 동물을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이것은 동물을 위해서 안 한다 부분을 말씀……

○최봉홍 위원 그렇지요? 동물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이지요?

○진술인 조희경 예.

○최봉홍 위원 신 교수님, 닭이 오리알을 까 놓으면 오리병아리가 닭을 자기 엄마로 알고 늘 따라다니지요?

○진술인 신남식 예.

○최봉홍 위원 그게 동물의 본성 아닙니까?

○진술인 신남식 예, 각인이라고 그러지요.

○최봉홍 위원 다른 데 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물에 들어가기 싫을 겁니다. 자라나는 환경에 따라서, 종의 보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동물은 동물 자체로서 동물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평소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하신 말씀 중에 동물보호법으로, 동물원법보다 동물보호법으로 다뤄야 된다 하는 것에 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동물원법이 외국에 봐 가지고 OECD 가입한 그런 나라들이 전부 다 동물원법이라는 게 갖춰져 있습니까?

○진술인 신남식 지금 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제가 다시 한 번 조사는 하겠습니까마는 동물원법이 전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봉홍 위원 그다음에 또 환경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국내

동물전시실 시설이 전국에 육십아홉 곳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사육사 수가 전부 몇 명쯤 되어 있습니까? 전체 합치면, 동물사육사가?

○참고인 이민호 위원님, 저희가 사실……

○최봉홍 위원 조사한 게 없지요?

○참고인 이민호 예, 관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최봉홍 위원 전문사육사가 몇 명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사육 곰 문제 아까 잠깐 나왔는데 사육 곰 현재 몇 마리인지 아십니까?

○참고인 이민호 1040마리 근처에 있습니다.

○최봉홍 위원 작년에 몇 마리 있었습니까?

○참고인 이민호 조금 더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최봉홍 위원 더 있었어요? 더 적었습니다. 새끼를 쳐 가지고 늘어났어요. 그게 동물관리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지금 동물원법을 만들면 여기에 해당되는 이 사람들이, 사육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동물은 더 학대를 당합니다. 그거 인정하시지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쭙 보겠습니다.

교육과 훈련의 차이, 교육과 훈련의 차이는 동물이 느끼는 정도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그런데 동물을 언론에서 취급하는 것을 보면 꼭 학대나 그런 것들만 다루어 가지고 침소봉대가 많이 나옵니다. 그 대신에 일반 가정에서 키우는 애완견이나 그런 문제는 집에서 전부 가족들처럼 생각해 가지고 자기 애들 때리듯이 때릴 때는 때리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키우는데 동물원은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동물 자체 보호가 아니라 이 규정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더 큰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데, 자연보전국장님 한번 답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이민호 직접적인 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언론이라든가 여기서 동물복지 문제가 사실 여러 번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동물원에서의 동물복지 또는 보호 측면에서의 법이 되면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봉홍 위원 그것을 기준점으로 봐 가지고 일정기준을 정해서 그것을 전부 강제로 해 나간다면

면, 동물원에 있는 동물이나 전시실에 있는 동물들이 여건에 따라 가지고 다 스트레스받고 이상 생기는 게 제가 볼 때는 70% 넘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동물 보호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최봉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정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애 위원** 제가 이항 교수님께 여쭙 보겠습니다.

질의를 하시면서 훈련과 학대를 자꾸 혼용해서 말씀들을 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훈련은 필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동물원에 갇히게 되는, 일정 부분 원래 자기가 살던 영역이 아닌 특정한 공간에, 어쨌든 주어진 공간에 살게 되는 동물들이 그 영역에 적응을 하기 위한 일정 부분의 훈련은 필요하지만 왜 학대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사실은 그게 쇼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전시가 아니라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쇼의 형태로 가기 때문에 사실은 학대라는 방법을 동원을 해서 그게 침이 되든 매가 되든 발길질을 하든 때리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사실은 그게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오도되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지요?

○**진술인 이항** 예, 동물원에서 운영을 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연을 위한 것하고 동물원에서 관리를 위한 것, 동물복지를 위한 훈련, 그다음에 행동풍부화 이런 세 가지 범주가 있는데요.

일단 관람을 위한 공연에는 강제성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동물원에서 관리나 동물복지를 위한 훈련 그것은 긍정적 강화훈련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것은 절대 강제로 해서는 안 되는 게 규범입니다. 그래서 동물이 원할 때만 사육사가 훈련을 하게 되어 있고, 동물이 원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그만뒀어 되는 게 긍정적 강화훈련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공연을 위한 훈련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사람들 다 돈 쥐 놓고 모아 놓고 공연하다가 ‘동물이 하기 싫어하는데 그만 두겠습니다’ 이렇게 못 하거든요.

○**한정애 위원** 좀 더 강제적인 방식이 동원되고 그러다 보니까……

○**진술인 이항** 강제성이 있게 됩니다.

○**한정애 위원** 그렇지요. 학대가……

○**진술인 이항** 학대가 부수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한정애 위원** 그런 구조적인 형태가 들어가는 것이지요.

○**진술인 이항** 그다음에 행동풍부화는 그것은 훈련이 아닙니다. 이것은 동물이 자기 자발적으로 야생에서의 행동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그것을 훈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한정애 위원** 교수님께서 동물복지 강조하셨는데요. 대체적으로 격리된 동물들에서 나타나는 저런 행동, 이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저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들은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진술인 이항** 제일 좋은 게 아까 말씀드린 행동풍부화 프로그램을 아주 정교하게 잘 짜서 하면 상당 부분 예방은 할 수 있지요.

○**한정애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스트레스를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흔히 말하는 면적이라든지 주어진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에도 당연히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진술인 이항** 당연히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지요. 아주 좁은 감옥 안에 갇히면 누구든지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동물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래서 일정 부분으로, 물론 동물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안락함을 느낄 수 있고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의 면적을 정해 주는 것,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이항** 그것은 마치 국회에서 사람에게 최저임금제라는 것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으로 기본적으로 살려면 최소한의 임금은 받아야 된다 그런 개념이 있는 것처럼, 그러나 상한은 없지요. 버는 사람은 얼마든지, 그것을 일률적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동물에게도 최저 공간권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저는 허가제의 기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정애 위원** 하나만 조희경 대표께 여쭙 보겠습니다.

동물자유연대 활동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동물원 보셨을 텐데요. 최근에 동물원들이 동물쇼라는 이름이 주는 거부감 때문에, 이게 학대와 자

꾸 연관이 되니까, 지금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생태설명회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는 데요.

대표님 판단하시기에 이름처럼 이게 정말로 생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인지, 그게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어떤 것인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진술인 조희경 전혀 생태설명회가 아닙니다. 그냥 쇼를 생태설명회라고 표현을 했고 조금 더 정교한 방식으로 표현을, 사람의 눈을 화려하게 느낄 수 있는 이러한 방식으로 했을 뿐이지 동물에 쇼하는 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여전히 같고요.

그러한 생태설명회가 특히 더 생태설명회라고 볼 수 없는 것은 그 동물이 가지고 있는 생태적 특성을 다 보여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는. 그리고 관람객들한테 재미를 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계속 표를 팔아야 되니까, 재미를 주기 위해서 바다사자가 윗몸일으키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원숭이한테 자전거 타기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전혀 생태하고도 맞지 않는 왜곡된 정보를 어린아이들한테 보여 줌으로써 오히려 교육을 망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지금 조사를 한 게 많은데 동물 쇼라든지 또는 훈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국민인식 조사 결과는 어떤 식으로 나왔나요?

○진술인 조희경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역시, 성균관대학교 한은경 교수님이 조사를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90.8%의 국민들이 전기충격기라든가 채찍, 족쇄 이런 것을 훈련할 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90.8%의 국민들이 동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쇼에 따르는 훈련, 공연 같은 것은 58.9%,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모습만 보기 때문에 국민들이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정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도 역시 반수 이상 58.9%가 그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국민들이 의견을 모아 주셨습니다.

○한정애 위원 여기까지 하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한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1차 질의는 다 끝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몇 분 계신가요?

그러면 세 분 위원님들 3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나 위원 장하나입니다.

아까 환경부 이민호 국장님께서 임의등록제, 의무등록제 이렇게 고민하셨다고 환경부 구상 말씀들을 해 주셨고요.

또 환경부에서는 야생동물인데 20종 이상을 보유한 시설만 동물원으로 정의해서 허가제든가 동물원법의 규정을 받도록 하겠다 이런 안도 있었습니까? 20종 이상의 야생동물이라는 규정이 환경부에서 검토가 됐었나요?

○참고인 이민호 예, 실무적으로……

○장하나 위원 아, 실무적으로 그러셨나요?

○참고인 이민호 예.

○장하나 위원 현재 우리나라 동물원 현황을 환경부는 파악 못 하고 있고, 지금 자료집 52페이지 53페이지 54페이지 보시면 동물자유연대에서 70여 곳 이렇게 조사해 놓은 게 있으세요. 이거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 맞으시지요, 조희경 대표님?

○진술인 조희경 예.

○장하나 위원 그래서 아까 신남식 교수님께서도 지금 협회에는 14개 시설이 등록되어 있고 이중에 10곳이 지자체에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실제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동물원 수보다 너무 작기 때문에 또 협회가 그런 규모에서도 제 역할을 하기가 이제는 힘든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목록 70여 곳을 봤을 때 지금 환경부가 검토만 했다고 하셨지만 20종 이상의 야생동물을 보유한 동물원만 규정했을 때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물 학대라든가 동물원법이 필요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고 보여지는데요, 동자연에서 이런 파악을 하셨을 때 어떤 규모의 어떤 동물원에서 가장 문제가 심각했는지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진술인 조희경 주로 거의 서커스 수준의 동물 쇼를 제공하면서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이런 동물원이 가장 문제가 컸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학대적인 행위라든가 아니면 전기충격기에 의해서 동물들의 행동을 제압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컸고요, 특히 원숭이학교라든가 그다음에 코끼리 같은 그 덩치 큰 동물을 작은 원통 위에 올라가게 하는 쇼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정말 눈 뜨고 보기 어려울 만큼 처절한, 그러니까 정말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동물들의 처절한 모습이 그대로 다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장하나 위원** 소위 이름에 ‘원숭이학교’ ‘코끼리마을’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데, 그러면 20종 이하로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까, 현장에는?

○**진술인 조희경**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에는 그런 단일종들이라든가 아니면 일부 몇 종만 데리고 동물쇼를 하는, 왜냐하면 그쪽 사람들도 관리라든가 이런 게 부족한 상태에서 하려다 보니까 특정 동물만 하는 이런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대다수의 동물원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확률이 크다고 봅니다.

○**장하나 위원** 그런가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동물원등관리위원회를 두어서 사육 부적합종, 적합종을 장관이 매년 공표하도록 했고요, 그러면서 문제가 되는 게 북극곰, 펭귄 이러한 종들일 겁니다.

이 자리에 이항 교수님 계신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1분만 더 드릴게요.

○**장하나 위원** 감사합니다.

영국에서도 그렇고요, 스위스의 바젤동물원, 취리히동물원 이런 세계 유수의 동물원에서도 북극곰 전시를 중단하는 추세가 1990년대 이후에 유럽에서 출발해서 죽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법이 있든 없든 간에 현저하게, 북극곰이 그런 극지대가 아닌 곳에 있게 하는 것 자체는 누가 봐도 부연이 필요 없을 정도로 확대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러한 사육 부적합종을 관리위원회가 선정하고 장관이 공표하는 것에 대해서 교수님은 이런 필요성, 그리고 이런 법도입이 안 됐을 때 자정작용이 어느 정도 한국 사회에 있을 것인가 두루두루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이항** 특히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동물원 사이에 경쟁적인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 동물원에 코끼리가 있는데 우리도 코끼리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 몇 종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확대할 필요는 없고 정말 사육하기 어려운 몇 종에 대해서는 법으로 아예 금지시켜 놓으면 동물원 사이의 경쟁도 없어질 테니까 오히려 동물원한테 금전적으로도 이득이 되고, 동물원한테 득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하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범위하게 다 제한을 한다는 게 아니라 정말 꼭 필요한 종에 대해서는 업체 간의 불필요한 경쟁도 막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진술인 이항** 예, 특수한 몇 종에 대해서.

○**장하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장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미 위원** 저는 환경부에게 부탁도 드리고 싶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먼저……

장하나 위원님도 그렇겠지만 저 역시 이러한 동물원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고려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 인간도 농노나 노예인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17, 18세기에 처음 근대법, 보호법이 들어올 때 누구는 그런 법을 적용하는 것을 획일적이라고 얘기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보편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생명을 가진 모든, 그다음에 특히 취약한, 더군다나 말도 못 하는 이런 약한 존재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획일적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보편적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보편적 최소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대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대세에 좀 따라 보자, 우리가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 과거에 환경 보호를 가지고 돈 벌다 이것은 상상을 못 했는데 최근에는 환경 보호를 통해서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가 트렌드입니다. 저는 동물복지를 통해서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역시 트렌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 어릴 때는 물 위에서, 외부 공간에서 쇼를 하는 것으로 돈을 벌었다면 요즘에는 거대한 수족관 내의 동물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교육시키는 방식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렇게 트렌드가 변하고 있고 이런 트렌드를 선도하는 것이 또한 기업이나 국가에도 도움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환경부가 적어도 임의등록제는 반대해 주셔야, 그것은 아니다, 저는 허가제에 동의하지만 정 안 되면 의무등록제 정도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임의등록제라 함은

등록 안 한 쪽은 아무나 등록하든 말든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보편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임의등록제는 아예 배제를 해 달라라는 부탁을 우선 하나 드리고요, 그것에 대한 답을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이항 교수님께는, 사실 저희들이 이 기본적인 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듣기로 외국에서는 법이 기본적으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시민들이 플러스알파로 ‘좋은 동물원’ ‘나쁜 동물원’ 이런 인증까지 해서 훨씬 더 선도해 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혹여 지금 제시한 법 이외에 더 나아가서, 이것은 좀 더 면 얘기일 수 있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좀 더 고려해야 될 법적인 조언이나 조치들이 있는지를 이항 교수님도 그렇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희경 선생님도 그렇고 좀 답변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환경부부터 답변을 해 주십시오.

○참고인 이민호 위원님 말씀하신 임의등록제보다는 의무등록제 쪽으로 검토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의무등록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은수미 위원 배제를 하시지는 않을 거고요, 임의등록제?

○참고인 이민호 예, 임의등록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한 사유, 기존에 이미 여러 가지 이유로 동물원 운영을 하고 있었던 그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접근을 했었던 측면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의무등록제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적극적으로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은수미 위원 그리고 두 분, 저희들이 더 고려해야 될 플러스알파, 법적이거나 제도적인 요소들을 좀……

○진술인 이항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허가제를 하고 거기다가 동물원 인증제를 할 수 있는 인증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라든지, 환경부…… 그런데 그 인증위원들은 동물원에 계신 분도 물론 참여를 하고 시민단체도 참여하고 학계, 윤리학계 이렇게 참여해 가지고 인증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인증 받는 동물원은 진짜 정

부에서 지원을 해 주자는 거지요. 그러니까 최소한만 만족시키는, 마지못해 하는 그런 동물원에 우리가 지원을 해 줄 필요는 없고 제대로 하는 동물원은 진짜 국가가 육성해서 세계적인 동물원 추세를 따라가면 동물원 업계에도 분명히 장기적으로 이득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좀 불이익이나 재정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가, 점점 사람들이 열악한 동물원에 가는 것은 불편해 하거든요. 점점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런 면에서 인증제 같은 플러스알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술인 조희경 저는, 이미 많이 의견을 주셔서 좋은 안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우선적으로 여기서 논의되지 않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동물원 중 번식에 관련된 부분이 또 심각하게 다뤄져야 됩니다.

지금 서울 시내에 있는 동물원 같은 경우 이방의 반만 한 방에서 암사자 세 마리가 바깥에도 못 나가고 실내에서만 살고 있습니다. 국내에 이미 호랑이, 사자가 다 동물원마다 포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 데가 없어 가지고 몇 년 동안 이렇게 갇힌 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원에서 무분별하게 번식하는 부분을 분명히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이것은 사실 중 보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다양성이 거기에서 획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많이 다뤄져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남는 동물들을 동물원 간에 서로 필요한 동물끼리 맞바꾸거나 거래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거래하는 데 있어서 동물복지 기준이 거기에서 평가가 돼서 동물복지가 현저하게 더 나쁜 형태의 동물원으로 가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적합한가 아닌가 이런 부분도 다 체크해야 되는 추가적인 논의사항들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동물쇼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정말 많은 나라에서 금지했습니다. 지금 여기 새누리당 위원님이 가셔서 정말 안타까워 죽겠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영국도 없다고 그러셨는데, 여기 보여 드리지만 사자와 호랑이 단일종에 대해서 다 이렇게 규격, 기준이 있습니다. 사이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규격 이런 것들이 단일종 하나마다, 이것이 영국 정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런 부분

들이 우리나라가 너무 미약하다는 부분을 좀 안타깝게 생각해 주셔서 좀 더 선진적인 나라의 대열에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영주 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정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애 위원 이민호 국장님께 마무리를 하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죽 얘기를 들으셨는데, 동물공연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지요?

○참고인 이민호 예, 어느 정도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정애 위원 그리고 동물원법과 더불어서 작년에..... 작년이 아니고 벌써 재작년이 됐군요. 2013년에 제가 발의했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작년 3월부터 조정을 진행했습니다. 그렇지요? 해수부 그리고 산림청, 환경부 이렇게 해서, 올해 3월에는 국무조정실 통해서 동·식물원법으로 초안이 만들어졌는데요, 그 이후에 조정은 완료가 됐나요?

○참고인 이민호 아직 안 됐습니다.

○한정애 위원 제가 듣기로도 조정이 진행되다가 마지막에 산림청 쪽과 최종적으로 조정을 하는데 실패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조정이 안 된 겁니까?

○참고인 이민호 저희가 동·식물원법을 정부안으로 검토했던 이유는 오늘도 많이 나왔던 종의 보전이라는 측면에서 동물뿐 아니라 식물도, 지금 동물원이 종 보전 기능을 하듯이 식물원도 역시 종 보전 기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체계상 동물원, 식물원을 함께 한 법에서 다루면서 동물 얘기가 나올 때는 동물에 관한 얘기는 별도 장에서 자세히 다루고 또 식물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같은 법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단일법으로 가는 것도 좋겠다라는 정부의 검토가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크게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이렇게 세 가지 나눠서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동물원을 환경부가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식물원 관련해서 산림청과 환경부가 약간 이견이 있었습니

다. 환경부도 충분히 식물원을 관리할 수 있고 또 산림청도 수목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관리와 관련해서 약간 이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한정애 위원 이게 1년이나 넘는 기간 동안 조정을 한다고 한다고 했는데 지금 조정이 전혀 무리가 안 되고 있어서.....

그러면 저희가 동물원법안의 상임위 논의 전에, 완전히 법안소위하고 여기에서 논의되기 전에 조정의 가능성은 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참고인 이민호 지금도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국조실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5월 달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정부가 생각하는 내부의 조정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려고 합니다.

○한정애 위원 부처 간에 너무, 지금 이걸 진행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해당 부처가 해당 업무를 제대로 잘 진행은 하지 못하면서, 챙기고 있지 못하면서.....

해수부도 수족관 거 제대로 못 챙기고 있고 산림청도 수목원만 관리하다가 갑자기 식물과 관련한 것까지 이제는 아예 다 하겠다, 하고 있지도 못하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기 영역만 자꾸 키우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연환경을 어떻게 보존을 해야 되고 그 속에서 종 다양성을, 생태를 어떻게 보존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것을 기준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조정을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6월 달에는 가능하면 상임위 논의 때 한꺼번에 다 논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급한 거부터 해야 되겠지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이민호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주 한정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세 분 위원님들 계시는데 다시 추가로 마무리발언 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이것으로 진술인과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의 진술인과 두 분의 참고인들께서 진술하신 내용과 위원님들과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의견들은 우리 위원회가 동물원 법안 등 관련 법안들을 심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셔서 유익한 진술을 해 주시고 진지하게 답변해 주신 진술인과 참고인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내일이 보궐선거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오늘 현장에 선거 지원으로 나가서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자리해 주신 은수미 위원님, 장하나 위원님, 한정애 위원님 그리고 손충덕 수석전문위원과 보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동물원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권성동	김영주	김용남	문대성
은수미	이석현	이인영	이자스민
장하나	최봉홍	한정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전문위원	김양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환경부장관	윤성규
차관	정연만

○출석 진술인

신남식(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이기원(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 이사)
 이향(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조희경(동물자유연대 대표)

○출석 참고인

이민호(환경부 자연보전국장)
 박승준(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